<기자수첩>

주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

최근 관세청이 에탄올함유 의약품에 주세를 부과한데 대해 해당기업들이 집단으로 반발, 급기야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또 이들 13개 제약기업들 외에 상당수 기업들이 이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파문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삼진제약이 부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차공판을 마쳤으며 종근당 등 7개기업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해서라도 기어이 승소하고 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에 당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던 정부측은 심판일자를 9월말에서 10월말로 연기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정부측 주장이 설득력을 점점 잃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주세법상 알콜 1도이상의 일반품목과 6도이상의 의약품에 대해 주세를 부과토록 명기돼 있는 만큼 알콜 40~60도인 원료의약품은 당연히 주세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논리만을 시종일관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주세법상의 의약품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세인 주세가 향락문화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세금이라는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쓰이는 의약품에도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기업들은 일본의 예를들어 40년전부터 주류로 사용될 목적외의 품목에는 일체 주세를 부과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일과 비슷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어 입지를 좁히고 있다.
또 정부가 그동안 이문제를 거론치 않다가 에탄올함유 의약품시장이커지자 법적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강한 질타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번일을 계기로 우선적으로 주세법이 개선돼야 하며 정부도 문민정부에 걸맞는 융통성 있는 선진화된 행정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화학저널 1994/10/24>